

의안번호	2217526
의 퇴 인	이인선의원
회 답 일	2026.3.31.
추계번호	26E1519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및 물가연동제 도입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,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- 재정수입 감소는 2027년 2.1조원, 2031년 14.9조원 등 2027~2031년 5년간 총 44.6조원(연평균 8.9조원)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1년

(단위: 조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물가연동제 도입 (안 제55조제1항)	-2.1	-7.5	-8.6	-11.4	-14.9	-44.6	-8.9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 내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안 제55조 (세율)	○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물가연동제 도입 - 2027년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조정 -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 조정 - 물가조정계수는 (1+ 해당연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)을 말함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4">과세표준</th></tr> <tr> <th colspan="2">현행</th><th colspan="2">2027~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0~1,400만원</td><td>6%</td><td>(0~1,500만원) × 물가조정계수</td><td>6%</td></tr> <tr> <td>1,400~5,000만원</td><td>15%</td><td>(1,500~5,400만원) × 물가조정계수</td><td>15%</td></tr> <tr> <td>5,000~8,800만원</td><td>24%</td><td>(5,400~9,500만원) × 물가조정계수</td><td>24%</td></tr> <tr> <td>8,800만원~1.5억원</td><td>35%</td><td>(9,500만원~1.6억원) × 물가조정계수</td><td>35%</td></tr> <tr> <td>1.5~3억원</td><td>38%</td><td>(1.6~3.2억원) × 물가조정계수</td><td>38%</td></tr> <tr> <td>3~5억원</td><td>40%</td><td>(3.2~5.4억원) × 물가조정계수</td><td>40%</td></tr> <tr> <td>5~10억원</td><td>42%</td><td>(5.4~10.8억원) × 물가조정계수</td><td>42%</td></tr> <tr> <td>10억원 초과</td><td>45%</td><td>(10.8억원 초과) × 물가조정계수</td><td>45%</td></tr> </tbody> </table> ○ 부칙에 따라, 2027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(과세표준 구간의 물가연동은 2028년부터 적용)	과세표준				현행		2027~		0~1,400만원	6%	(0~1,500만원) × 물가조정계수	6%	1,400~5,000만원	15%	(1,500~5,400만원) × 물가조정계수	15%	5,000~8,800만원	24%	(5,400~9,500만원) × 물가조정계수	24%	8,800만원~1.5억원	35%	(9,500만원~1.6억원) × 물가조정계수	35%	1.5~3억원	38%	(1.6~3.2억원) × 물가조정계수	38%	3~5억원	40%	(3.2~5.4억원) × 물가조정계수	40%	5~10억원	42%	(5.4~10.8억원) × 물가조정계수	42%	10억원 초과	45%	(10.8억원 초과) × 물가조정계수	45%	
과세표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현행		2027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0~1,400만원	6%	(0~1,500만원) × 물가조정계수	6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400~5,000만원	15%	(1,500~5,400만원) × 물가조정계수	1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,000~8,800만원	24%	(5,400~9,500만원) × 물가조정계수	2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,800만원~1.5억원	35%	(9,500만원~1.6억원) × 물가조정계수	3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5~3억원	38%	(1.6~3.2억원) × 물가조정계수	3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~5억원	40%	(3.2~5.4억원) × 물가조정계수	4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~10억원	42%	(5.4~10.8억원) × 물가조정계수	42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억원 초과	45%	(10.8억원 초과) × 물가조정계수	4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5조(세율)	○	근로소득세, 종합소득세, 양도소득세는 세수효과를 추계하였으나,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세수효과 추계하지 못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,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
 - 근로소득세의 2027년 세수효과는 간이세액표 개정('27.2월 예정) 이후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4월부터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7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가 차년도 확정신고 시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
 -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 거래분의 세수효과가 동일 연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¹⁾
-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근로소득세, 종합소득세, 양도소득세의 국세통계 신고현황 자료(과세표준 구간별 100여개 구간 자료)를 이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
 - 현재 이용 가능한 최신 연도의 국세청 집계자료(국세청 제출) 활용
 -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경우, 각각의 세수효과를 추계하여 합산하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인원은 제외하여 추계
 - 양도소득세의 경우,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현황 합계를 연간 신고현황으로 전제
 -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세수 효과를 추계하지 못함
- 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이 국회예산정책처(2026.3)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따른다고 전제하며, 2028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

1) 양도소득세는 연간 신고건 수를 기초로 세수를 추계함에 따라, 거래 발생과 신고 간 약 2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연간 신고건 수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, 당해연도 거래분에 따른 세수효과가 동일 연도 세수에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

- 본 법률안에 따라 2028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전년도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에 “1+ 해당연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”을 곱하여 조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추계 방법

가. 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

□ (연도별 과세표준 구간 조정) 2027년에는 개정안의 과세표준 구간 금액이 적용되고, 2028년부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한 과세표준 구간 금액이 적용됨

- 2028~203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 = 전년도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 × (1 + 해당연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)
- 2028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(2026.3)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따를 것으로 전제
 - 소비자물가상승률(%): ('28) 2.0 ('29) 2.0 ('30) 2.0 ('31) 2.0

[표 2] 물가조정계수 적용에 따른 향후 과세표준 구간

(단위: 만원)

세율	과세표준 구간					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6%	~1,400	~1,500	~1,530	~1,561	~1,592	~1,624
15%	~5,000	~5,400	~5,508	~5,618	~5,731	~5,845
23%	~8,000	~9,500	~9,690	~9,884	~10,081	~10,283
30%	~20,000	~16,000	~16,320	~16,646	~16,979	~17,319
36%	~30,000	~32,000	~32,640	~33,293	~33,959	~34,638
40%	~50,000	~54,000	~55,080	~56,182	~57,305	~58,451
44%	~100,000	~108,000	~110,160	~112,363	~114,610	~116,903
48%	100,000~	108,000~	110,160~	112,363~	114,610~	116,903~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

- (개요) 세목별 과세표준 구간을 100여개로 구분하여 향후 5년간의 소득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을 전망한 후, 현행 및 개정안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현행 및 개정안의 1인당 산출세액을 도출하고, 이를 바탕으로 1인당 결정세액 감소분을 산출한 후 적용 인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총 세수감소분 추계
 - 먼저, 향후 5년간 과세표준 규모별 1인당 총급여액(종합소득금액)을 전망한 후, 2024년 귀속 과세표준 규모별 1인당 총급여액(종합소득금액) 대비 과세표준 비율이 향후 5년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, 1인당 총급여액(종합소득금액) 전망치에 동 비율을 곱하여 연도별 1인당 과세표준 전망
 - 과세표준 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 전망치에 현행 및 개정안의 과세표준 규모별 기본세율(6~45%)을 곱하여 1인당 산출세액 도출
 - 현행 및 개정안의 1인당 산출세액에 세액공제·감면액을 반영하여 결정세액 감소분 도출 후 소득구간별 결정세액 인원 전망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세수감소분 추계

- (향후 5년간 1인당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) 과세표준 구간별로 2024년 귀속 기준 1인당 총급여액(종합소득금액)을 도출한 후, 동 금액에 향후 5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(경상GDP 증가율) 전망(2026.3.)을 반영하여 추정
 - 명목임금상승률(%): ('27) 3.3 ('28) 3.3 ('29) 3.3 ('30) 3.3 ('31) 3.3
 - 경상GDP 증가율(%): ('27) 3.9 ('28) 3.7 ('29) 3.5 ('30) 3.5 ('31) 3.5

- (향후 5년간 1인당 과세표준) 향후 5년간 1인당 총급여액(종합소득금액) 전망치에 2024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총급여액(종합소득금액) 대비 과세표준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
 - 총급여액 대비 과세표준 비율은 과세표준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.8%이나,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일 경우 97.7% 수준(2024년 귀속 기준)

- 종합소득금액 대비 과세표준 비율은 과세표준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.2%이나,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일 경우 99.0% 수준(2024년 귀속 기준)
- (향후 5년간 1인당 산출세액) 1인당 과세표준에 현행 및 개정안의 과세표준 구간별 명목세율(6~45%)을 곱하여 추계
 - (현행) 1인당 산출세액 = 1인당 과세표준 ×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명목세율(6~45%)
 - (개정안) 1인당 산출세액 = 1인당 과세표준 ×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매년 재산정한 과세표준 구간별 명목세율(6~45%)
- (향후 5년간 1인당 세수효과) 현행 및 개정안의 1인당 산출세액에 세액공제·감면액을 반영하여 1인당 결정세액 산출 후,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1인당 결정세액 감소분(세수효과) 도출
 -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·감면액은 산출세액 변동에 연동되는 세액공제·감면을 별도로 감안하여 추정
 - － 근로소득세는 1인당 세액공제·감면액 추계 시 과표구간별 평균세액공제·감면액 중 53.9%²⁾는 산출세액에 비례해 변동하고, 나머지 46.1%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
 - － 종합소득세는 1인당 세액공제·감면액 추계 시 과표구간별 평균세액공제·감면액 중 53.2%³⁾는 산출세액에 비례해 변동하고, 나머지 46.8%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
- (향후 5년간 총 세수효과) 1인당 세수효과에 각 과세표준 구간별 결정세액 인원수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를 추계
 - 향후 5년간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세액 인원수는 2023년 대비 2024년 증가율을 따른다고 가정
 - － 인원수 증가율에 따라 세수효과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

2) 전체 세액공제·감면액 중 산출세액에 연동되는 항목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,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있음
 3) 전체 세액공제·감면액 중 산출세액에 연동되는 항목에는 기장세액공제, 배당세액공제, 외국납부세액공제,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음

- 다만,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(이하 ‘중복자’)를 제외하여 추계
 - 근로소득자 중에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(예시: 사업소득,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등)이 있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발생
 - 국세청에서 제공한 2024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인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수 비중을 활용하여 중복자 인원을 제외한 근로소득신고 인원(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)을 대상으로 총세수효과를 추계

다. 양도소득세

- (향후 5년간 1인당 과세표준 전망)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변동 등에 따라 과세표준 규모별 신고건 수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2022~2024 귀속연도 평균 기준으로 1건당 과세표준을 도출한 후, 동 금액에 향후 5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증가율 전망(2026.12)을 반영하여 추정
 - 양도소득세 역시 과세표준 구간을 100여개로 구분한 자료를 활용하여 세수효과 추계
 - 경상GDP 증가율(%): ('27) 3.9 ('28) 3.7 ('29) 3.5 ('30) 3.5 ('31) 3.5
- (향후 5년간 총 세수효과 전망) 1건당 과세표준에 개정안이 반영된 과세표준 구간별 명목세율(6~45%)를 곱하여 현행 및 개정안의 산출세액을 구하고, 이에 각 구간별 신고건수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 추계
 - 양도소득세의 신고 건수와 과세표준은 국세통계연보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산하여 사용(2022~2024 귀속연도 평균 기준 약 76.3만건)
 - 향후 1인당 과세표준 규모별 과세표준은 경상GDP 증가율을 따른다고 가정
 - 향후 과세표준 규모별 신고건 수는 2022~2024년 평균 건수가 유지된다고 가정
 - 1인당 과세표준 중 소득세 기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 과세표준(주식 양도소득, 고율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⁴⁾)은 제외한 후 개정안에 따른 산출세액 추계

4) 1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, 2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, 비사업용토지, 미등기 양도

- 별도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비중이 전 과표구간에 균등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고, 별도세율로 과세되는 주식(32.5%⁵⁾)과 고율과세대상 자산(8.2%⁶⁾)의 합계(40.7%) 만큼 신고건수 및 과세표준이 감소한다고 전제
- 개정안에 따른 총세수효과(총결정세액변화분)는 총산출세액변화분에서 산출세액 중 주요 세액공제·감면대상액의 비중을 차감하여 추정
 - 총 산출세액 중 주요 세액감면 항목(8년 이상 자경농민,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감면)의 비중은 2022~2024년 평균, 5.9%

(2) 추계 결과

가. 귀속연도 기준 세목별 세수효과 추계 결과

- (근로소득세)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을 조정할 경우, 근로소득세는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27.2조원(연평균 5.4조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근로소득세 세수효과(소득 발생연도 기준, 귀속 기준)

(단위: 조원)

과세표준 구간별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합계	-2.6	-3.7	-5.1	-6.8	-9.0	-27.2	-5.4
0~1,400만원	-0.01	-0.02	-0.03	-0.04	-0.05	-0.17	-0.03
1,400~5,000만원	-0.53	-0.75	-1.00	-1.29	-1.64	-5.20	-1.04
5,000~8,800만원	-0.88	-1.27	-1.75	-2.35	-3.07	-9.32	-1.86
8,800만원~15억원	-0.85	-1.21	-1.68	-2.31	-3.10	-9.14	-1.83
1.5~3억원	-0.24	-0.35	-0.47	-0.62	-0.80	-2.48	-0.50
3~5억원	-0.05	-0.08	-0.11	-0.16	-0.21	-0.62	-0.12
5~10억원	-0.02	-0.03	-0.04	-0.05	-0.07	-0.21	-0.04
10억원 초과	-0.01	-0.01	-0.02	-0.02	-0.03	-0.09	-0.02

주: 과세표준구간 구분은 2024년 귀속 기준이며, 1인당 과세표준이 연도별로 상승함에 따라 차년도로 갈수록 1인당 과세표준이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값을 가질 수 있음

- (종합소득세)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을 조정할 경우, 종합소득세는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9.7조원(연평균 3.9조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

5) 총양도소득 대비 주식양도소득 비중, 2022~2024년 평균

6) 총양도차익 대비 고율과세대상 양도차익 비중, 2022~2024년 평균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수효과(소득 발생연도 기준, 귀속 기준)

(단위: 조원)

과세표준 구간별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합계	-2.0	-2.8	-3.8	-4.9	-6.3	-19.7	-3.9
0~1,400만원	-0.02	-0.04	-0.05	-0.08	-0.10	-0.29	-0.06
1,400~5,000만원	-0.36	-0.51	-0.70	-0.92	-1.18	-3.66	-0.73
5,000~8,800만원	-0.42	-0.60	-0.81	-1.05	-1.35	-4.23	-0.85
8,800만원~15억원	-0.52	-0.75	-1.02	-1.35	-1.73	-5.36	-1.07
1.5~3억원	-0.33	-0.45	-0.59	-0.75	-0.94	-3.06	-0.61
3~5억원	-0.13	-0.17	-0.23	-0.30	-0.37	-1.20	-0.24
5~10억원	-0.10	-0.14	-0.19	-0.25	-0.31	-1.00	-0.20
10억원 초과	-0.09	-0.13	-0.18	-0.23	-0.29	-0.93	-0.19

주: 과세표준구간 구분은 2024년 귀속 기준이며, 1인당 과세표준액이 연도별로 상승함에 따라 차년도로 갈수록 1인당 과세표준이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값을 가질 수 있음

□ (양도소득세)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을 조정할 경우, 양도소득세는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.4조원(연평균 0.3조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수효과(소득 발생연도 기준, 귀속 기준)

(단위: 조원)

과세표준 구간별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합계	-0.2	-0.2	-0.3	-0.3	-0.4	-1.4	-0.3
0~1,400만원	0.00	0.00	0.00	0.00	0.00	-0.01	0.00
1,400~5,000만원	-0.01	-0.02	-0.02	-0.03	-0.03	-0.12	-0.02
5,000~8,800만원	-0.02	-0.03	-0.04	-0.05	-0.06	-0.21	-0.04
8,800만원~15억원	-0.04	-0.05	-0.06	-0.07	-0.08	-0.30	-0.06
1.5~3억원	-0.04	-0.05	-0.06	-0.07	-0.08	-0.28	-0.06
3~5억원	-0.02	-0.03	-0.03	-0.04	-0.04	-0.16	-0.03
5~10억원	-0.02	-0.03	-0.03	-0.04	-0.04	-0.15	-0.03
10억원 초과	-0.03	-0.03	-0.04	-0.05	-0.06	-0.20	-0.04

주: 과세표준구간 구분은 2024년 귀속 기준이며, 1인당 과세표준액이 연도별로 상승함에 따라 차년도로 갈수록 1인당 과세표준이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값을 가질 수 있음

나. 종합 결과

- (귀속 기준)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7년 4.7조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48.4조원(연평균 9.7조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(소득 발생연도 기준, 귀속 기준)

(단위: 조원)

세목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합계	-4.7	-6.7	-9.2	-12.1	-15.6	-48.4	-9.7
근로소득세	-2.6	-3.7	-5.1	-6.8	-9.0	-27.2	-5.4
종합소득세	-2.0	-2.8	-3.8	-4.9	-6.3	-19.7	-3.9
양도소득세	-0.2	-0.2	-0.3	-0.3	-0.4	-1.4	-0.3

- (징수 기준) 소득세 세목별로 징주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, 소득세는 2027~2031년 동안 총 44.6조원(연평균 8.9조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

- 근로소득세의 2027년 세수효과는 간이세액표 개정('27.2월 예정) 이후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4월부터 세수가 발생
-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수가 차년도 확정신고시에만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
-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 거래분의 세수효과가 동일 연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(징수 기준)

(단위: 조원)

세목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합계	-2.1	-7.5	-8.6	-11.4	-14.9	-44.6	-8.9
근로소득세	-1.9	-4.4	-5.1	-6.8	-9.0	-27.2	-5.4
종합소득세	-	-3.0	-3.2	-4.3	-5.5	-15.9	-3.2
양도소득세	-0.2	-0.2	-0.3	-0.3	-0.4	-1.4	-0.3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